

# 第109回(臨時會)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第1號(附錄) 本會議會議錄

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

## 目 次

- 1. 第109回 서울特別市 鐘路區議會 臨時會 議事日程 ..... 1面
- 2.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 ..... 2面

### 1. 第109回 臨時會 議事日程

○ 회 기 : 2001. 3. 15(목) ~ 3. 20(화), 6일간

○ 의사일정

일 시	부 의 안 건	비 고
3월15일 (목)	10:30 ○ 제108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1.제109회 임시회 개의시 협의의 건 2.제10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	○ 제108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
	11:00 ○ 개회식 ○ 제1차 본회의 1.제10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.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.구정질문의 건 4.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	○본회의휴회결의 -3. 16~19(4일)
3월16일 (금)	10:00 ○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1.안전심사	○조례(안) 및 의견청취
	○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1.안전심사 및 의견청취	
3월17일 (토)	11:00 ○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1.소관 국별 당면 현안사항 관련회의	
	○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1.소관 국별 당면 현안사항 관련회의	
3월18일 (일)	휴 무	
3월19일 (월)	11:00 ○ 제3차 시민행정위원회 1.안전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회의	○조례(안) 등 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 등
	○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1.안전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회의	
3월20일 (화)	11:00 ○ 제2차 본회의 1.안전처리(조례안 등 심의) 2.구정질문의 건(답변) 3.폐 회	○조례(안) 등 심의

2.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

의안 번호	804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1. 3.

제안자 : 안재홍 의원 외 3인

1. 주 문

-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자 함  
(출석일자 : 제109회 임시회의시)

2. 제안이유

- 지역민원과 시책추진사항 등 구정의 개별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실시,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함

3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
-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
-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, 제65조의2